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

의안 번호 172 제출연월일 : 2012. 7. 18

제출자 : 장문혁 의원 외 5인

1. 주 문

가.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요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.

나. 심사기간은 2012년 7월 24일, 1일간으로 한다.

2. 제안이유

가. 평창군수가 발의한 조례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및 평창군의회위원회 조례 관계규정에 따라 조례심사 특별위원 회를 위원 6인으로 구성한다.

3. 참고사항: 없음

심 사 계 획

1. 활동목적

- 심도있는 심사로 최고 의결기관으로서의 역할 강화
- 신속한 의사진행

2. 심사안건

-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
-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
- 평창군상표권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
- 평창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- 평창군 마하생태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3. 활동기간

○ 2012년 7월 24일, 1일간으로 한다.

4. 구 성

○ 정문섭 의원, 이만재 의원, 유인환 의원, 박종욱 의원, 장문혁 의원, 이정율 의원

5. 운영계획

일 시	차 수	내 용	刊	고
2012.	제1차	1.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		
7. 24	조례특위	2.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		
(화)		3. 평창군상표권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		
		4. 평창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	
		5. 평창군 마하생태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		
		조례안		